의 안 번 호	제 145 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일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5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4일
발 의 자 : 김국기·박경숙·김꽃임·이양섭·이의영·이종갑·임병운 의원

1. 제안이유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실태조사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 후계농어업인등에 관한 지원사업과 지도·감독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까지)

○ 지원사업의 제한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2022. 11. ~ 11.

○ **협 의** :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 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으로서 도에 주소를 두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역할)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어업 생산활동을 통하여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후계농어업인등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 · 문화 · 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일반 현황 및 애로사항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3. 후계농어업인등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후계농어업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정착 지원
2.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 후계농어업인등의 생산품 판로 지원
4.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5. 영농 · 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지원조건 및 내용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 · 감독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후계농어업인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 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관계 공무원의 방문 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제한)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인단체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 · 군 및 지역 유관기관 ·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청년농업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충청북도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법령 발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 · 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영농 · 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4. “후계농어업인단체”란 후계농어업인이 미래 농업 및 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후계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후계농어업인의 요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나이, 영농 · 영어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2.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제3조(청년농어업인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에서 “나이, 거주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나이가 4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후계농어업인단체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인원 및 선정요건·신청기간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받으려는 사람은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1항의 선정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등의 선정절차)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선정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선정 신청 내용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그 검토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 신청서 또는 선정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이 제2조제2항의 선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선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

2. 비용 발생 요인

○ 후계농·청년농 창업 정착 지원,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생산품 판로지원,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지원

○ 영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등

3. 관련조문

○ 조례안 제6조(지원사업)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후계농·청년농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 계 결 과 : 273.3억원(국비 146.4, 도비 37, 시군비 89.9)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 기존사업 11개 : 255.8억원
- 청년농부 선진농업국가 벤치마킹 등 신규사업 4개 : 17.5억원

○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함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4,418,300**	**4,418,300**	**4,418,300**	**4,418,300**	**4,418,300**	**22,091,500**
(기존) 6개 사업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4,418,300	4,418,300	4,418,300	4,418,300	4,418,300	22,091,500
세 출		**5,863,320**	**5,395,720**	**5,356,520**	**5,356,520**	**5,356,520**	**27,328,600**
(기존) 11개 사업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 청년농업인 협업기반 조성 -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사업 - 청년4-H회원 창업 성공모델 지원사업 -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조성 - 청년농업 리더육성 교육		5,473,320	5,055,720	5,016,520	5,016,520	5,016,520	25,578,600
(신규) 후계농·청년농 육성 종합계획 수립		비예산	-	-	-	-	-
(신규) 청년농부 선진 농업국가 벤치마킹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500,000
(신규) 청년농부 네트워크 지원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신규) 1억농부 실현 종합계획 수립		50,000	-	-	-	-	50,000
재원 조달		**5,863,320**	**5,395,720**	**5,356,520**	**5,356,520**	**5,356,520**	**27,328,600**
국비	기존사업	2,928,000	2,928,000	2,928,000	2,928,000	2,928,000	14,640,000
도비	계	**1,054,560**	**669,280**	**657,520**	**657,520**	**657,520**	**3,696,400**
	기존사업	664,560	539,280	527,520	527,520	527,520	2,786,400
	신규사업	39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910,000
시군비	계	**1,880,760**	**1,798,440**	**1,771,000**	**1,771,000**	**1,771,000**	**8,992,200**
	기존사업	1,880,760	1,588,440	1,561,000	1,561,000	1,561,000	8,152,200
	신규사업	-	210,000	210,000	210,000	210,000	840,00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